##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574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재무과), 02-970-6124

제정 2015. 6.30.

개정 2015. 12. 31.

개정 2019. 5.31.

개정 2020. 12. 3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본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본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 단장으로 구성한다.
  - ③ 일반직위원은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3명(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일반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원 : 본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평의회에서 추천
  - 2. 직원 : 본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무원직원단체, 대학회계직원단체에서 추천
  - 3. 재학생 : 본교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
  - 4.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본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 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관련 부서에서 추천
- 제7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교원인 일반직위원 : 2년
  - 2. 직원인 일반직위원 : 2년
  -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 2년
  - 4.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인 일반직위원 : 2년
  - 5.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 일반직위원 :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귈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재정 및 회계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대학회계직원(기타 연봉제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의2(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회의안건을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시 회의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9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다만, 일반직위원이 본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 장,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도서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기 재정전망
  -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 4. 재정규모증가율
  - 5. 법 제28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 9.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④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 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총장은 예산편성안의 사전 검토를 위한 대학회계예산소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 ①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 생지도 등의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 영역
    - 2. 연구 영역
    - 3. 학생지도 영역 등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본교 소속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본교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⑦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및 근로조건 보장 등) ①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이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제288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 중기재정운용계획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재정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설치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비용 지급 심사 위원회는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제306호, 2015.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19.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4호, 2020.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